

경찰법상 위험개념

General Idea of Danger in Police Law

구형근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Hyung-Keun Gu(younbal89@naver.com)

요약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 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 중심어 : | 경찰법상 위험 | 위험방지 | 경찰권 |

Abstract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for danger prevention gives top priority to the prevention of injury occurrence.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concept of danger has hitherto focused on the limit establishment, namely which scope is to be a target of prevention in the danger prevention area of the Police Law. After all, the police's duty for maintaining public peace and order is forced to be performed through individual measures for danger prevention, and the preventive police action, which aims at the prevention of danger against the protection interest in the Police Law, can be performed on the premise of a precise understanding of danger in order to carry out a legitimate preventive police action. In addition, it examines the legal meaning in each constitution element by dividing the minimum common components of danger into loss, sufficient probability and time accessibility, and the interpretation problem of danger as uncertainty concept.

■ keyword : | Danger in Police Law | Prevention of Danger | Police Power |

I. 서 론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서 경찰의 목적은 공공

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와 장해를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 위

하는 위험과 장해로 구분되는데, 먼저 위험은 만일에 그것을 방지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손해, 즉 법익이나 가치의 감소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장해라 함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일반적으로 경찰권이 행사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제공하는 것이 위험의 문제다[1].

장해는 위험이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그 판단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위험은 미래의 예측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위험의 경우는 손해의 발생가능성에 불과하므로 여러 가지로 인식할 수 있는 여러 상태 중에 과연 어떠한 상태를 위험으로 보고 경찰권이 행사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여기에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개념에 대해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모든 경찰작용법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하기가 힘들고 또한 경찰권의 행사는 권력적 요소가 매우 강한 행정작용으로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행정법문헌들은 단지 경찰법상 위험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2], 그것을 방지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해를 가져올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3], 현재의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4], 일반적인 생활경험상 판단에 의할 때 어떠한 행위나 상태가 방해를 받지 않고 전전되면 멀지 아니한 시점에 경찰상 보호이익에 피해를 가져올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5] 등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이후 학설과 판례에서도 세부적인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예측되는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라고 정의되고 있다. 혹은 간단히 「손해발생의 개연성」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6]. 따라서 경찰법상 위험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손해」와 「충분한 개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시간적 접근성」도 경찰법상 위험개념의 구성요소에 포함할 수 있다.

II. 위험의 구성요소

1. 손해

경찰법상 위험개념의 구성요소로서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인 현존상태가 외부적 영향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7].

다만 법익이 완벽하게 불이익을 입지 않고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침범(Beeinträchtigungen)을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손해는 법익에 대한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침범으로서 수인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수인될 수 있는 불이익(Nachteil) 혹은 부담(Belastigung)은 손해가 아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손해가 될 수 없는 단순한 부담도 그것이 빈발하게 되면 전체로써 여기서의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단순한 부담들이 결합되어 그것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손해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찰이 방지하여야 할 손해의 영역과 경찰상 중요하지 않은 단순한 부담과의 구분에 있어서는 '정상인(평균인)'의 판단이 척도가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손해가 전적으로 관계인의 비정상적인 성질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될 수 없다. 예컨대 주거지역에서의 정상적인 판단에 따를 때, 단순한 부담으로 여겨지는 개 짖는 소리는 그것이 개개의 중환자나 신경쇠약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이를 금지시킬 수 없다. 여기서의 정상인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그때 그때의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주간에는 단순한 부담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소음수치가 야간에는 건강에 유해한 위험이 될 수도 있으며, 시골생활에서는 일상적인 냄새가 도시에서는 위험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실제로 현존하는 정상적인 상태의 존속이 외부로부터의 불규칙한 침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감소될 때만 손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8].

한편 소위 기대이익의 감소는 경찰법상의 손해는 될 수 없으며, 단순한 불이익에 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상의 한계는 경찰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권한이 있을 뿐이며 현존하는 상태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그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는, 이른바 복지증진의 금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컨대 경찰행정청은 무숙의 상태로부터 무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만 강제적인 주거배정을 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주거배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사회적 사정이 동시에 건강에 대한 위험 혹은 공공의 질서에 대한 장해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은 현존하는 상태의 개선을 위하여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이 전염병예방을 목적으로 취수시설의 개선을 명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될 것이다.

결국 손해와 (수인될 수 있는) 불이익 혹은 부담은 법 규범과 그때 그때의 표준적인 사회적 법칙이 법익주체에게 통상적인 것으로서 인용케 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즉, 주위의 환경, 손해의 성질과 반복성, 손해를 받는 인적범위 등을 고려해서 경합하는 모든 이익을 비교형량을 통해 가치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2. 충분한 개연성

2.1 개설

보호법익이 통상적으로 위협받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다시 말해서 보통의 감수할 수 있는 손해가능성을 넘어서는 경우에 손해발생에 대한 충분한 개연성(hinreichende Wahrscheinlichkeit)이 있다고 설명된다. 즉, 손해의 발생이 일반적인 생활상의 리스크(Risk)를 넘어서는 경우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며 결국 경찰법상의 위험은 특별하고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리스크를 뜻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법상의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경찰의 개입 없이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9].

여기서 개연성이란 손해발생의 단순한 추정 혹은 약간의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즉 단순한 가능성으로는 만족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100%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개념도 아니다. 단순한 개연성(bloße Möglichkeit) 혹은 손상발생과 동떨어지지 않은 가능성(nicht entfernte Möglichkeit)의 경우에도 위험이 인정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에서 보이듯이 충분한 개연성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엄격하게 해석되는 것만은 아니다.

결국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찰법상 위험을 예측되는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개연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등이 문제이다.

2.2 반비례정식

독일의 판례는 경찰법상 위험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에 대한 손해발생의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과 미미한 가능성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10].

단순한 논리적 가능성도 충분한 개연성도 어떤 것인가 명확하진 않지만 경찰법상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리 확정하고 있는 레벨이 있어 그 이상의 개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상을 받는다. 혹 수치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0.5이상이나 0.8이상의 확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보호법익이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경우에, 이 보호법익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보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경찰에 의한 개입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다. 여기서 손해가 발생되는 보호법익이 무엇이냐에 의해 충분한 개연성의 정도는 일정하지 않게 생각되어질 수 있다. 독일 연방행정재판소도 보호법익이 중대 할수록 손해발생의 개연성은 작어도 좋다는 반비례정식을 세우고 있고, 그 후의 여러 판례도 경찰법상의 위험에 대해서도 같은 반비례정식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학설상에도 지지되어, 반비례정식 이론은 경찰법 영역 외에도 위험방지영역에도 정착되었다[11].

결국 위험의 존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개연성의 정도는 예견되는 손해의 강도(범위)와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위협받게 되는 경찰상 보호법익의 중요성 및 보호의 필요성과 같은 요소에 달려 있다. 즉, 발생가능한 손해가 중대하면 할수록 그의 개연성은 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소위 Je-desto-Regel). 따라서

발생가능한 손해가 매우 중대하여서, 특히 생명·건강과 같은 고차원의 보호법익이 위협을 받는 경우라면 손해발생의 개연성은 최소한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위험의 개념에 있어서 개연성의 정도와 손해는 반비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개연성판단의 기초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은 항상 미래의 손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들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한 예측이 행해진다. 예측에 의하여 과거와 현재의 사정으로부터 미래의 사건을 추론하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예측은 '미래에 대한 정신적 선취'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상황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은 학문적 인식 혹은 경험지식에 의거한다[12].

이는 객관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개입은 위법이 되고 따라서 경찰이 어느 상태를 위협이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위험이며 경찰개입이 반드시 적법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험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예측에 기초를 두고 있고 사항의 성질상, 경찰개입이 되지 않아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판명된다 해도 그것으로 즉각 개입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연성 판단은 불확실 아래에서의 행위이고 그 성질상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당연히 처음부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해발생을 위한 조건이 존재 하는가 아닌가는 어느 쪽이든 위험조건이 있다면 손해발생은 필연이고, 반대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필연이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후에 판명된 경우에 처음부터 손해발생의 가능성은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연성 판단이 반드시 객관적 이지 않을 때는 요청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점에 대해 연방행정법원 판례는 「손해발생의 개연성 판단은 경찰이 개입시점에 있어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를 두고 사전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개입할 수밖에 없고 후에 별개의 정보가 더해져 실제로

는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해도 경찰의 개입이 위법이라고 판단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개연성 판단은 인간의 판단이라는 주관에서 떨어져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경찰이 실제로 위법이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규범주관적인 것이라 하고 개연성의 「객관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객관성」은 공정하게 충분한 능력이 있고 충분한 경험을 쌓은 사람이 비슷한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파악해야 한다

결국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에 대한 위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개연성 판단은 예측에 근거하는 바, 그 예측에 있어서는 「사전적」(ex ante), 즉 경찰이 개입하는 시점에서의 사실상태와 인식가능성이 기준이 된다[13]. 따라서 경찰이 개입하는 시점에서 상황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다면, 사건의 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측한 것과 달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이유로 개입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2.4 침해이익과의 관계

손해발생의 개연성의 판단이 예측작용으로서 객관적 가치판단이라고 한다면 경찰개입에 의해 침해된 이익도 고려요소로써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손해발생의 개연성 판단에 있어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쌍방이 동시에 고려요소로써 등장하는 것은 헌법상의 요청이라 말할 수 있다. 독일 연방행정재판소는 손해발생의 개연성의 정도에 대해 침해이익과 보호이익에 근거하여 비례원칙을 요구하고 있다[14].

이것을 부연하면 이하의 것처럼 될 것이다. 예컨대 한쪽의 자유권으로서의 기본권의 관점에서는 경찰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따라서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다지 개입의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양자의 조정이 중요하다. 이 양자의 조정의 핵심은 비례원칙인 것이다. 손해발생에 대한 개연성 판단에 있어 자유권으로

서의 침해이익의 관점으로서는 개연성의 정도는 높은 요구(예를 들면 확실하고 분명한 등)를 할 수 있지만, 기본권 보호의무의 관점으로는 낮은 요구에 의해서도 개입하게 되어 양자의 조정으로써 충분한 개연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그리하여 경찰개입에 있어 보호법익과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침해이익의 고려를 함께하여 이 둘의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결국 경찰의 개입에 의해 침해의 정도가 강한 것은(예컨대 신체의 구속 등) 위협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연성의 정도를 높여야 한다.

3. 시간적 접근성

손해발생의 시간적 요소는 위험의 개념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위험의 개념을 시간적 요소를 포함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15].

즉, 「예측되는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 했던 정의이다. 그러나 「예측되는 장래」라고 해도 손해발생이 시간적으로 예측의 시점과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어야 하는가는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위험의 성립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이 목전에 급박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렇다면 예측의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과의 사이에 큰 시간적 거리가 있어도 좋다고 하는 것 인지는 알 수 없다[16].

물론 예측의 시점에서 시간상 극단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손해발생도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높으면 그것은 위험이라 판단되고 따라서 경찰개입은 정당하다. 그러나 시간적 접근성이 위험판단에 있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손해발생의 시간적 접근성에 따라 예측의 정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개연성이 증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7]. 왜냐하면 시간적 접근성이 가까울수록 손해발생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불확정인 요소 즉, 예측된 사태의 추이에 있어서 변경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간적 접근성은 손해발생의 개연성의 정도를 규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또한 그 자체로서 위험의 독립요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III. 결 론

오늘날 경찰 위험은 과거와는 달리 피해의 광범위성, 대규모성 등으로 인하여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 등에 커다란 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찰법상 위험방지의 구체화 혹은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물론 이로 인하여 경찰권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우려도 있지만 이는 경찰권 한계이론, 판례의 축적 등 특히 법원의 통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를 통하여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 등의 보호법익을 보호하여야 한다[18].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찰법상 위험개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석기준의 확립이다. 물론 경찰법상 위험은 예측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용이하지 않지만 경찰법상 위험개념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위험은 가치 또는 법익의 감소를 가져오는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불이익 또는 부담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경찰이 방지하여야 할 손해의 영역과 단순한 부담과의 구분에 있어서는 평균인의 판단이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부담이 관계인의 비정상적인 성질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단순한 불이익과 부담도 그것이 빈발하게 되어 수인 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혹은 시간과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는 법익의 감소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결국 위험은 주위의 환경, 손해의 성질과 반복성, 손해를 받는 인적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둘째, 법령의 위반은 법익의 침해가 없더라도 위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즉 통상적인 법규정의 위반은 당해 규범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의 침해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이미 위험의 방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셋째, 위험은 예측되는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예측의 시점에서 시간상 떨어져 있는 손해발생도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높으면 그것은 위험이 된다. 그러나 보통은 손해발생의 시간적 근접성에 따라 예측의 정도가 높아지

고 그만큼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증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시간적 근접성이 가까울수록 손해발생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불확정한 요소, 바꾸어 말하면 예측된 사태의 추이에 있어서 변경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측되지 않는 먼 훗날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만으로는 경찰법상 진정한 위험으로 볼 수 없다.

넷째,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연성 판단은 예측에 근거하는 바, 그 예측에 있어서는 사전적(ex ante), 즉 경찰이 개입하는 시점에서의 사실상태와 인식가능성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경찰이 개입하는 시점에서 상황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다면, 사건의 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측한 것과 달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이유로 개입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끝으로 오늘날 고도의 위험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권한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이에 못지않게 국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책무가 심화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양자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는가가 앞으로의 경찰법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세규, “경찰법상 위험의 의미”,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p.603, 2003.
- [2]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2.
- [3]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1.
- [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4.
- [5]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5.
- [6] Nell, Wahrscheinlichkeitsurteile in juristischen Entscheidungen, p.65, 1983.

- [7] 桑原勇進, “危險概念の考察,” *公法學の法と政策* (下), pp.649-650, 有斐閣, 2000.
- [8] Schenke, Polizei-und Ordnungsrecht, in: U. Steiner(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6. Aufl., p.185, 1999.
- [9] Friauf, Polizei-und Ordnungsrecht, in: von Münch(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11. Aufl., p.223, 1999.
- [10] PrOVG 77, 341; PrOVG 78, 273.
- [11] Schenke, Wolf-Ruediger, *Polizei-und Ordnungsrecht*, Rn. 46. inSteiner, Udo, *Besonderes Verwaltungsrecht*, 12 Aufl., C. F. Mueller, p.245, 2002.
- [12] Götz, *Allgemeines Polizei-und Ordnungsrecht*, 12. Aufl., p.63, 1995.
- [13] Wolff/Bachof, *VerwaltungsrechtIII*, 4. Aufl., p.55, 1978.
- [14] DVBl 1974, 207 209; VerwGE 45, 51 61.
- [15] 桑原勇進. “非客觀的危險.” *行政法の發展と變革*, p.664, 有斐閣, 2001.
- [16] 大橋洋一, “緊急の措置.” *行政判例100選*, p.75, 有斐閣, 1999.
- [17] 田村正搏, *警察行政法解說*, 東京法令出版, 1989.
- [18] 田宮 裕/河上和雄, *大コソメソタール警察官職務執行法*, 青林書院, 1993.

저 자 소 개

구 흥근(Hyung-Keun Gu)

정회원



• 1999년 2월 : 조선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03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조선대학교 법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 인터넷 범죄, 사이버경찰작용